[별표11]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(제67조 관련)

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품명</th><th>자가사용인정기준
(면세통관범위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농림수
축산물</td><td>참기름, 참깨, 꿀, 고사리, 버섯, 더덕
호두
잣
소, 돼지고기
육포
수산물
기타</td><td>각 5kg

5kg
1kg
각 10kg
5kg
각 5kg
각 5kg</td><td>○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(식물방역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)</td></tr>
<tr><td>한약재</td><td>인삼(수삼,백삼,홍삼 등)
상황버섯
녹용
기타 한약재</td><td>합 300g
300g
검역후 150g
각 3kg</td><td>○녹용은 검역후 500g(면세범위 포함)까지 과세통관
○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뱀,뱀술,호골주 등 혐오식품</td><td>○CITES규제대상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VIAGRA 등 오・남용우려의약품</td><td>○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건강기능식품</td><td>총6병</td><td rowspan="3">○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. 다만,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
-CITES규제물품(예:사향 등) 성분이 함유된 물품
-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
-에페드린, 놀에페드린, 슈도에페드린, 에르고타민,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
○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. 다만,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의약품</td><td>총6병(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생약(한약)
제제</td><td>모발재생제
제조환
다편환, 인삼봉황
소염제
구심환
소갈환
활락환, 삼편환
백봉환, 우황청심환</td><td>100ml×2병
8g入×20병
10T×3갑
50T×3병
400T×3병
30T×3병
10알
30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十全大補湯,蛇粉,鹿胎膏,秋風透骨丸,朱砂,虎骨,雜骨,熊膽,熊膽粉,雜膽,海狗腎,鹿腎,麝香,男寶,女寶,春寶,青春寶,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</td><td>○ 약사법 대상</td></tr>
<tr><td>마약류</td><td colspan="2">芬氣拉明片, 鹽酸安非拉同片, 히로뽕, 阿片, 大麻草 등</td><td>○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</td></tr>
<tr><td>야생동물
관련제품</td><td colspan="2">호피,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</td><td>○ CITES규제대상</td></tr>
<tr><td>기호물품</td><td>주류
궐련
엽궐련
전자담배
기타담배
향수</td><td>1병(1ℓ이하)
200개비
50개비
니코틴용액 20ml
250g
60ml</td><td>○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
○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 colspan="3">○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
○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</td></tr>
</table>